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허4086 등록정정(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헌, 김민수, 조민주

변리사 김세환, 안제성, 김한솔, 김준식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진호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성일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5. 2.

주 문

- 1. 특허심판원이 2022. 6. 17. 2021정15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는 2021. 12. 31. 특허심판원 2021정154호로 아래 나.항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명세서에 대하여 정정심판(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에의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 4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라는 정정불인정 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2) 원고는 2022. 5. 23. 정정불인정 이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2. 6. 17.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정정요건은 충족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 4항은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정정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

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특허법 제 136조 제5항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 1) 발명의 명칭: 롤방충망의 록킹구조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4. 29./ 2013. 2. 13./ 제10-1234527호
- 3) 특허권자: 워고
- 4) 청구범위

가) 2016. 11. 28.자 정정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16정139호)에 의하여 정정된 청 구범위

【청구항 1】 전후방향으로 개방된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의 안쪽에서 슬라이딩가능하게 장착된 슬라이딩도어와; 일단이 상기 슬라이딩도어에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프레임의 일측에 연결되어 상기 슬라이딩도어의 이동시 권취되면서 상기 프레임으로부터 인출 또는 인입되는 방충망과; 상기 슬라이딩도어를 상기 프레임의 타측에 선택적으로 잠금 또는 해제하는 록킹부로 이루어진 롤방충망에 있어서, 상기 록킹부는 상기슬라이딩도어의 가운데에 형성되며, 상기 슬라이딩도어에 고정 결합되고, 전후방향으로이동공이 관통하여 형성된 지지부재와; 상기 이동공에 전후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되고, 전면에 걸림홈이 형성된 슬라이더와; 상기 슬라이더의 후면에 배치되어상기 슬라이더를 상기 방충망의 반대방향으로 탄성지지하는 스프링과; 상기 프레임의타측에 형성되고 상기 슬라이더가 배치되는 후방향으로 절곡되어 상기 걸림홈에 선택적으로 삽입되는 걸림부로 이루어지되, 상기 슬라이더는 상기 슬라이딩도어의 슬라이

당방향에 대한 수직방향인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걸림부와 결합되며, 상기 슬라이더의 양측에는 가이드돌기가 돌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이동공의 양측에는 상기 가이드돌기가 삽입되고 안내되는 가이드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가이드홈은 상기 지지부재의 후면방향으로 개방되고 전면방향으로는 폐쇄되어 있어 상기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한 상기 가이드돌기의 전면방향 이동거리를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롤방충망의 록킹구조.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은 코일스프링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슬라이더에는 후면방향으로 개방된 안착홈이 형성되되, 상기 스프링은 상기 안착홈에 삽입 배치되어 상기 슬라이딩도어와 슬라이더에 접하여 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롤방충망의 록킹구조.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더의 전면은 상기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 상기 이동공을 관통하여 돌출 형성되고, 상기 슬라이더의 하부는 상기 걸림홈 방향으로 상향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걸림부의 상부는 절곡방향으로 하향 경사지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롤방충망의 록킹구조.

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청구범위(정정심판청구로 추가한 부분은 밑줄 로, 삭제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청구항 1】 전후방향으로 개방된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의 안쪽에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된 슬라이딩도어와; 일단이 상기 슬라이딩도어에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프레임의 일측에 연결되어 상기 슬라이딩도어의 이동시 귄취되면서 상기 프레임으로부 터 인출 또는 인입되는 방충망과; 상기 슬라이딩도어를 상기 프레임의 타측에 선택적

으로 잠금 또는 해제하는 록킹부로 이루어진 롤방충망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록킹부는 상기 슬라이딩도어의 가운데에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 다). 상기 슬라이딩도어에 고정 결합되고. 전후방향으로 이동공이 관통하여 형성된 지 지부재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이동공에 전후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되고, 전면에 걸림홈이 형성된 슬라이더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슬라이 더의 후면에 배치되어 상기 슬라이더를 상기 방충망의 반대방향으로 탄성지지하는 스 프릿과(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되고 상기 슬라이더가 배 치되는 후방향으로 절곡되어 상기 걸림홈에 선택적으로 삽입되는 걸림부로 이루어지되 (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슬라이더는 상기 슬라이딩도어의 슬라이딩방향에 대한 수직방향인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걸림부와 결합되며(이하 '구성요소 7'이 라 한다). 상기 슬라이더의 양측에는 가이드돌기가 돌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이동공의 양측에는 상기 가이드돌기가 삽입되고 안내되는 가이드홈이 형성되어 있으며(이하 '구 성요소 8'이라 한다), 상기 가이드홈은 상기 지지부재의 후면방향으로 개방되고 전면방 향으로는 폐쇄되어 있어 상기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한 상기 가이드돌기의 전면방향 이 동거리를 제한하고(이하 '구성요소 9'라 한다), 상기 슬라이더의 전면은 상기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 상기 이동공을 관통하여 돌출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10'이라 한다), 상기 스프링의 탄성복원력에 의해 상기 슬라이더의 전면에 형성된 상기 걸림홈에 상기 걸림부가 삽입되고(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슬라이더의 전면을 상기 스프링 방향으로 누르면, 상기 스프링이 압축되면서 상기 슬라이더의 전면에 형성된 상기 걸 림홈은 상기 걸림부로부터 이탈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롤방충망의 록킹구조(이하 '정정 후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3】 정정심판청구한 부분 없음.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더의 전면은 상기 스프 링의 탄성력에 의해 상기 이동공을 관통하여 돌출 형성되고, 상기 슬라이더의 하부는 상기 걸림홈 방향으로 상향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걸림부의 상부는 절곡방향으로 하향 경사지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롤방충망의 록킹구조.

5)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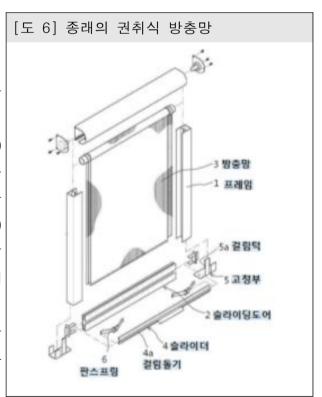
까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롤방충망의 록킹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롤형태의 방충망을 프레임에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롤방충망의 록킹구조에 관한 것이다.

대 배경기술

[0004]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근래에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권취수단을 구비하는 프레임(1)과, 상기 프레임(1)의 일측에 출몰가능하게 탄력적으로 내장되는 방충망(3)과, 상기 방충망(3)에 연결되는 슬라이딩도어(2)와, 상기 슬라이딩도어(2)에 전후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장착된 슬라이더(4)와, 상기 슬라이더(4)를 전방으로 탄성지지하는 판스프링(6)과, 상기 슬라이더(4)를 고정시키는 고정부(5)로 구성된 권취식 방충망이 제시되었다(등록실용신안 제20-0389392호 참조).

[0009]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권취식 방충망은, 슬라이더(4)의 양측을 고정부(5)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시 상기



방충망(3)을 잡아당기는 권취수단의 힘에 의해 상기 슬라이더(4)의 중심부가 상방향으로 휘

어지게 변형되어 걸림돌기(4a)가 걸림턱(5a)에 잘 결합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대 해결하려는 과제

[0010]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이용하여 슬라이딩되어 인출되는 방충망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고, 또한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으며, 외부충격에 의해 임의로 잠금상태가 해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롤방충망의 록킹구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래 과제의 해결 수단

[0011]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롤방충망의 록킹구조는, 전후방향으로 개방된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의 안쪽에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된 슬라이딩도어와; 일단이 상기 슬라이딩도어에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프레임의 일측에 연결되어 상기 슬라이딩도어의 이동시 권취되면서 상기 프레임으로부터 인출 또는 인입되는 방충망과; 상기 슬라이딩도어를 상기 프레임의 타측에 선택적으로 잠금 또는 해제하는 록킹부로 이루어진 롤방충망에 있어서, 상기 록킹부는, 상기 슬라이딩도어에 고정 결합되고, 전후방향으로 이동공이 형성된 지지부재와; 상기 이동공에 전후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되고, 전면에 걸림홈이 형성된 슬라이더와; 상기 슬라이더의 후면에 배치되어 상기 슬라이더를 상기 방충망의반대방향으로 탄성지지하는 스프링과; 상기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되고 상기 슬라이더가 배치되는 후방향으로 절곡되어 상기 걸림홈에 선택적으로 삽입되는 걸림부로 이루어지되, 상기 슬라이더는 상기 슬라이딩도어의 슬라이딩방향에 대한 수직방향인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걸림부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2] 상기 슬라이더의 양측에는 가이드돌기가 돌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이동공의 양측에는 상기 가이드돌기가 삽입되고 안내되는 가이드홈이 형성되어 있되, 상기 이동공은 상기 지지부재를 관통하여 형성되며, 상기 가이드홈은 상기 지지부재의 후면방향으로 개방되고 전면방향으로는 폐쇄되어 있어 상기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한 상기 가이드돌기의 전면방향 이동거리를 제한한다.

[0014] 상기 슬라이더의 전면은 상기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 상기 이동공을 관통하여 돌출 형성되고, 상기 슬라이더의 하부는 상기 걸림홈 방향으로 상향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걸림부의 상부는 절곡방향으로 하향 경사지게 형성된다.

매 발명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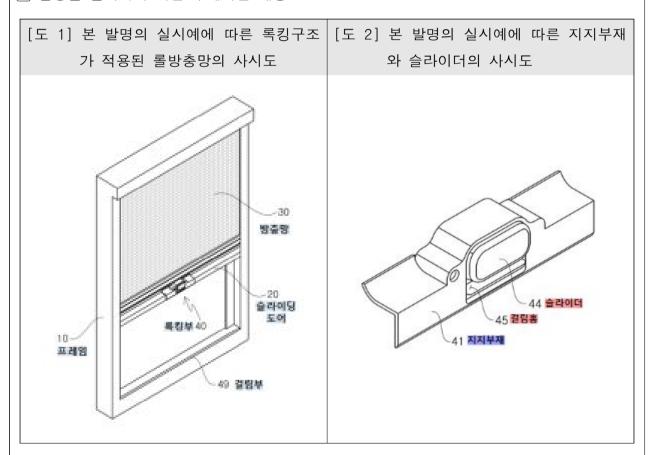
[0016] 상기 슬라이더는 상기 슬라이딩도어의 슬라이딩방향 즉 상하방향에 대한 수직방향인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여 후방향으로 절곡된 상기 걸림부와 결합되어 상기 방충망을 고

정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이용하여 슬라이딩되어 인출되는 방충망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고. 또한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다.

[0017] 즉, 상기 걸림부는 상기 슬라이더가 배치되는 후방향으로 절곡되어 있고, 상기 슬라이더는 이러한 상기 걸림부가 삽입되는 걸림홈이 전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방충망이 장기간 전개되어 권취수단의 힘이 상기 슬라이딩도어에 작용하여도 상기 슬라이 더가 휘어져 변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기 슬라이더가 걸림부로부터 쉽게 분리해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인출된 방충망이 견고하게 장시간 고정되도록 할 수 있다.

[0018] 뿐만 아니라, 외부충격에 의해 록킹부의 잠금상태가 임의로 해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배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1] 도 1 내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롤방충망(30)의 록킹구조는, 프레임(10)과, 슬라이딩도어(20)와, 방충망(30)과, 록킹부(40)로 이루어진다.

[0022] 상기 프레임(10)은 전체적으로 4각 형태로 이루어지고, 중심부는 전후방향으로

개방되어 있다.

[0023] 상기 슬라이딩도어(20)는 상기 프레임(10)의 안쪽 즉 개방된 중심부에 장착되어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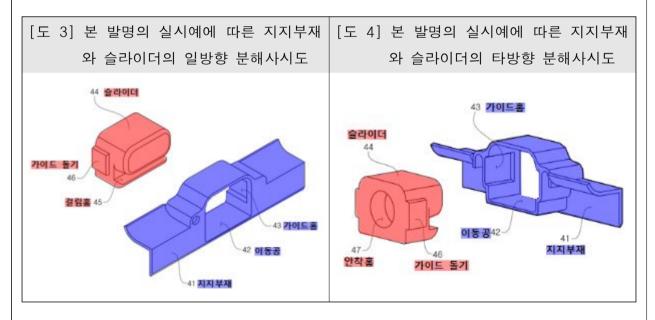
[0024] 즉, 상기 슬라이딩도어(20)는 상기 프레임(10)의 안쪽에 장착되어 상하방향 또는 좌우방향으로 슬라이딩되게 된다.

[0025] 상기 방충망(30)은 일단이 상기 슬라이딩도어(20)에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프레임(10)의 일측에 연결되어 상기 슬라이딩도어(20)의 이동시 귄취되면서 상기 프레임(10)으로부터 인출 또는 인입된다.

[0028] 상기 록킹부(40)는 상기 슬라이딩도어(20)를 상기 프레임(10)의 타측에 선택적으로 잠금 또는 해제하는 역할을 한다.

[0029] 상기 프레임(10)의 타측은 상기 방충망(30)이 타단이 연결되어 있는 상기 프레임(10)의 일측의 반대측을 의미한다.

[0030] 상기 록킹부(40)는 상기 슬라이딩도어(20)에 양측에 형성될 수도 있으나, 본 실시예와 같이 상기 슬리이딩도어(20)의 가운데에 형성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0031] 상기 슬라이딩도어(20)를 상기 프레임(10)의 타측에 잠금 및/또는 해제하기 위한 상기 록킹부(40)는, 지지부재(41)와, 슬라이더(44)와, 스프링(48)과, 걸림부(49)로 이루어진다.

[0032] 상기 지지부재(41)는 상기 슬라이딩도어(20)에 고정결합되고, 전후방향으로 이

동공(42)이 형성되어 있다.

[0033] 이를 위해 상기 슬라이딩도어(20)는 상기 지지부재(41)가 장착되기 위한 장착홈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슬라이딩도어(20)는 상기 장착홈에 삽입되도록 한다.

[0034] 그리고, 상기 이동공(42)은 상기 지지부재(41)에 전방으로만 개방되게 형성될수도 있으나, 본 실시예와 같이 상기 지지부재(41)에 전후방 모두가 개방되도록 관통형성되록¹⁾ 함이 바람직하다.

[0035] 상기 슬라이더(44)는 상기 이동공(42)에 전후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되고, 전면에는 걸림홈(45)이 형성되어 있다.

[0036] 상기 슬라이더(44)가 상기 지지부재(41)에 전후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되도록 하기 위해, 상기 슬라이더(44)의 양측에는 가이드돌기(46)가 돌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이동공(42)의 양측에는 상기 가이드돌기(46)가 삽입되고 안내되는 가이드홈(43)이 형성되어 있다.

[0037] 따라서, 상기 슬라이더(44)는 상기 가이드돌기(46)가 상기 가이드홈(43)에 삽입되어 안내됨으로써, 상기 슬라이더(44)는 상기 지지부재(41)에서 전후방향으로 안정적으로슬라이딩되게 된다.

[0038] 이때, 상기 가이드홈(43)은 상기 지지부재(41)의 후면방향으로 개방되고 전면방향으로는 폐쇄되어 있어, 상기 스프링(48)의 탄성력에 의한 상기 가이드돌기(46)의 전면방향 이동거리를 제한한다.

[0039] 이로 인해, 상기 슬라이더(44)가 상기 지지부재(41)의 전면방향으로 분리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0040] 또한, 상기 슬라이더(44)에는 후면방향으로 안착홈(47)이 개방 형성되어 있어, 상기 스프링(48)은 상기 안착홈(47)에 배치되게 된다.

[0041] 그리고, 상기 걸림홈(45)이 형성된 상기 슬라이더(44)의 전면은 상기 스프링(48)의 탄성력에 의해 상기 이동공(42)을 관통하여 돌출 형성되도록 한다.

[0042] 상기 스프링(48)은 상기 슬라이더(44)의 후면에 배치되어 상기 슬라이더(44)를 상기 방충망(30)의 반대방향으로 탄성지지한다.

[0043] 이러한 상기 스프링(48)은 코일스프링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안착홈(47)에 삽입배치되어 상기 슬라이딩도어(20)와 슬라이더(44)에 접하여 지지된다.

[0044] 상기 걸림부(49)는 상기 프레임(10)의 타측에 형성되고 상기 슬라이더(44)가 배 치되는 후방향으로 절곡되어 상기 걸림홈(45)에 선택적으로 삽입된다. [0045] 이때, 상기 슬라이더(44)의 하부는 상기 걸림홈(45) 방향으로 상향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걸림부(49)의 상부는 절곡방향으로 하향 경사지게 형성되도록 한다.

[0046] 이로 인해, 상기 슬라이더(44)가 상기 걸림부(49)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 상기 슬라이더(44)의 하부와 상기 걸림부(49)의 상부가 상호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어, 상기 걸림 부(49)가 상기 걸림홈(45)에 잘 삽입되도록 할 수 있다.

[0047] 위와 같은 구성에 의해 상기 슬라이더(44)는 상기 슬라이딩도어(20)의 슬라이딩 방향에 대한 수직방향인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걸림부(49)와 결합되게 된다.

[0048] 본 실시예 및 도면에서는 상기 슬라이딩도어(20)가 상하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도시하고 있으나, 상기 슬라이딩도어(20)는 좌우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0049] 이하, 상술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본 발명의 작동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0050] 도 5(a)는 슬라이더(44)가 걸림부(49)에 접하기 전의 상태를 도시한 것이고, 도 5(b)는 슬라이더(44)와 걸림부(49)가 상호 접하여 스프링(48)이 압축된 상태를 도시한 것이며, 도 5(c)는 슬라이더(44)의 걸림홈(45)에 걸림부(49)가 삽입된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0051]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태에서²⁾ 사용자가 상기 슬라이딩도어(20)를 잡고 상기 프레임(10)의 타측 즉 하방향으로 내리면, 상기 슬라이딩도어(20)의 하강에 의해 상기 방충망(30)을 인출되게 된다.

[0052] 이때, 상기 슬라이딩도어(20)가 하강함에 따라 상기 방충망(30)의 타단에 결합되어 있는 권취수단은 압축되게 된다.

[0053] 상기 슬라이딩도어(20)의 하강함에 따라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슬라이더(44)는 상기 걸림부(49)와 인접하게 된다.

[0054] 이때, 상기 슬라이더(44)는 상기 스프링(48)의 탄성력에 의해 전방 즉 도 5에서 우측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다.

[0055] 상기 슬라이딩도어(20)가 더 하강하게 되어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슬라이더(44)의 하부와 상기 걸림부(49)가 상호 접하게 되면, 상기 슬라이더(44)의 하부는 상기 걸림홈(45) 방향으로 상향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고 상기 걸림부(49)의 상면은 절곡방 향으로 하향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는바, 상기 슬라이더(44)는 자연스럽게 상기 스프링(48) 을 압축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0056] 이때, 상기 가이드돌기(46)는 가이드홈(43)을 따라 안내되면서 상기 슬라이더 (44)가 상기 지지부재(41)의 이동공(42)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0057] 도 5(b)에 도시된 상태에서 상기 슬라이딩도어(20)를 더 하강시키면, 압축되어

있던 상기 스프링(48)의 탄성복원력에 의해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슬라이더 (44)의 걸림홈(45)에는 상기 걸림부(49)가 삽입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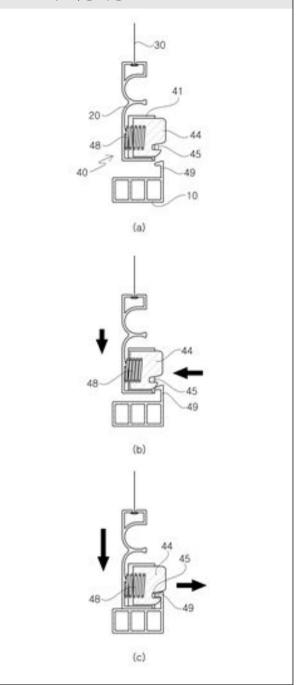
[0058] 이로 인해, 상기 슬라이딩도어 (20)는 상기 록킹부(40)에 의해 상기 프레임 (10)의 타측에 결합되게 된다.

[0059] 따라서, 상기 권취수단에 의해 상기 방충망(30)이 상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해도, 상기 록킹부(40)에 의해 상기 슬라이딩도어(20)가 상기 프레임(10)의 타측에 결합되어있는바 상기 방충망(30)이 전개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0060] 상기 걸림부(49)는 상기 슬라이더 (44)가 배치되는 후방향으로 절곡되어 있고, 상기 슬라이더(44)는 이러한 상기 걸림부(49)가 삽입되는 걸림홈(45)이 전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방충망(30)이 장기간 전개되어 권취수단의 힘이 상기 슬라이딩도어(20)에 작용하여도 상기 슬라이더(44)가 휘어져변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기 슬라이더(44)가 걸림부(49)로부터 쉽게 분리해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인출된 방충망(30)이 견고하게 장시간 고정되도록 할 수 있다.

[0061] 한편, 상기 방충망(30)을 감고자할 때에는, 사용자가 상기 이동공(42)을 관통하여 돌출되어 있는 상기 슬라이더(44)의 전면을 상기 스프링(48)을 압축시키는 방향으로누르면 된다.

[도 5]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롤방충망 의 작동과정도



[0062] 즉, 상기 슬라이더(44)의 전면을 상기 스프링(48) 방향으로 누르면, 상기 스프링

(48)은 압축되면서 상기 걸림홈(45)은 상기 걸림부(49)로부터 이탈되게 된다.

[0063] 이때, 압축되어 있던 상기 권취수단에 의해 상기 방충망(30) 및 슬라이딩도어 (20)는 상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0064] 위와 같이, 상기 슬라이더(44)는 상기 슬라이딩도어(20)의 슬라이딩방향 즉 상하방향에 대한 수직방향인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걸림부(49)와 결합되어 상기 방충망(30)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이용하여 롤형태의 방충망(30)으로 안정적으로 잠금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선행발명(갑 제13호증)3)

2009. 9. 10.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9-203617호에 게재된 '건물 개구부용 새시 프레임에 대한 스크린 프레임의 장착 구조'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주요 내용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1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정 후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 발명인 정정 후 제3, 4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의 정정요건 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선행발명의 래치(28)는 L자 형상의 가압자(28a) 및 갈고리 형상의 계합 갈고리 (28b)를 갖고 있어 래치(28)가 이동공을 관통할 수 없고 래치(28)와 래치(28) 지지부재

^{1) &#}x27;관통형성되도록'의 오기로 보인다.

^{2) &#}x27;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의 오기로 보인다.

³⁾ 피고보조참가인은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1971. 2. 26. 공고된 프랑스 특허 FR2045469 A5호에 게재된 '도어와 창문의 누름 버튼 록킹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정정심판에서 원고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의 조립을 단순화할 수 없으며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심결은 구성 요소 10의 슬라이더의 전면이 이동공을 관통하여 돌출 형성되는 구성의 의미 및 이로 인한 작용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 2) 선행발명의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는 외부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어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잠금상태가 임의로 해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심결은 구성요소 6의 걸림부가 슬라이더가 배치되는 후방향으로 절곡되어 있는 구성의 의미 및 이로 인한 작용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 3) 선행발명은 스크린 프레임(10)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동 문틀(16)을 가운데 빈 공간을 가지는 비대칭 U자 형상으로 형성하였고, 이러한 가동 문틀(16)의 구조는 수납 프레임(11), 수용 프레임(12)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선행발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구성이다. 가동 문틀(16)에 래치를 형성하는 것은 선행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잃게 하는 것이어서 생각해내기 어렵고 이러한 형상의 가동 문틀(16)에는 가이드돌기, 가이드홈을 도입할 수도 없다.
- 4) 이 사건 심결은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 곤 란성을 따져 보지 않고 롤방충망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개별 구성요소들의 진보성을 판 단하였고,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정정요 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또 는 선행발명에 주지관용기술을 참고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정정 후 제1항 발명이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정정 후 제4항 발명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1) 정정 후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은 잠금 방식이나 잠금 구조가 동일하고, 지지부재, 슬라이더를 슬라이딩도어에, 걸림부를 프레임의 타측에 각 형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충망에서 볼 수 있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므로, 선행발명의 래치(28) 지지부재[래치(28), 스프링 포함]와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의 위치만 변경하면 정정 후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 2)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가이드돌기와 가이드홈은 선행발명의 대응하는 구성과 형상 및 형성 위치에 차이가 있을 뿐 기능이 동일하고 가이드돌기와 가이드홈은 다양 한 기술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구성이므로, 선행발명의 대응하는 구성의 형상 및 위 치를 변경하여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3. 특허법 제136조 제5항 정정요건의 충족 여부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 중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정정 후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관련 법리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후2620 판결 등 참조).

2) 정정 후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대비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각 구성요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성요소	정정 후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전후방향으로 개방된 프레임과; 상기	○ 상기 새시 프레임(1)에 탈부착 가능
	프레임의 안쪽에서 슬라이딩 가능하게	하게 부착되는 스크린 프레임(10)은 좌
	장착된 슬라이딩도어와; 일단이 상기	우의 세로 프레임의 일방을 스크린(15)
	슬라이딩도어에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의 수납 프레임(11)으로 하고, 그 타방
	프레임의 일측에 연결되어 상기 슬라이	을 그 스크린(15)의 일단이 연결되어
	딩도어의 이동시 귄취되면서 상기 프레	그 스크린(15)의 개폐 조작을 행하는
	임으로부터 인출 또는 인입되는 방충망	가동 문틀(16)의 수용 프레임(12)으로
	과; 상기 슬라이딩도어를 상기 프레임	하며, 그들 수납 프레임(11) 및 수용 프
	의 타측에 선택적으로 잠금 또는 해제	레임(12)을, 상기 가동 문틀(16)의 상하
	하는 록킹부로 이루어진 롤방충망에 있	단을 가이드하는 상하의 가로 프레임
	어서,	(13, 14)에 의해 연결함으로써,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은 유닛으로서 구성하고
		있다(문단번호 [0013]).
		○ 전후방향으로 개방된 스크린 프레임
		(10), 스크린 프레임(10)의 안쪽에서 슬
		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된 가동 문틀(16),
		일단이 가동 문틀(16)에 연결되고 타단
		이 스크린 프레임(10)의 일측에 연결되
		어 가동 문틀(16)의 이동시 귄취되면서
		스크린 프레임(10)으로부터 인출 또는
		인입되는 스크린(15), 가동 문틀(16)을
		스크린 프레임(10)의 타측에 선택적으
		로 잠금 또는 해제하는 래치(28) 등 잠
		금수단([도 4])

2	상기 록킹부는 상기 슬라이딩도어의 가	│○ 수용 프레임(12)에 형성되어 가동│
	운데에 형성되며,	문틀(16)의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
		에 계탈하는 래치(28)(문단번호 [0006],
		[0018])
		○ 래치(28)는 수용 프레임(12)의 가운
		데에 형성,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
		는 가동 문틀(16)의 가운데에 형성([도
		4])
3	상기 슬라이딩도어에 고정 결합되고,	○ 수용 프레임(12)에 결합된 래치(28)
	전후방향으로 이동공이 관통하여 형성	를 지지하는 부재4)([도 4])
	된 지지부재와;	○ 래치(28) 지지부재에 전후방향으로
		형성된 래치(28) 이동 공간 ⁵⁾ ([도 8])
4	상기 이동공에 전후방향으로 슬라이딩	○ 래치(28) 지지부재에 전후방향으로
	가능하게 장착되고, 전면에 걸림홈이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된 래치(28)([도
	형성된 슬라이더와;	8])
		○ 래치가, 그 수용 프레임의 전면 측
		으로 돌출되도록 스프링 가압하여 형성
		된 가압자의 내단 측에 계합 갈고리를
		돌출 형성함으로써 구성되고(문단번호
		[0006])
		○ 래치(28)는 도 8에 상세하게 나타낸
		바와 같이, … 그 가압자(28a)의 내단
		측에 계합 갈고리(28b)가 돌출 형성되
		어 있다(문단번호 [0018]).
5	상기 슬라이더의 후면에 배치되어 상기	○ 래치(28)의 후면에 배치되어 래치
	슬라이더를 상기 방충망의 반대방향으	(28)를 스크린(15)의 반대방향으로 탄성
	로 탄성지지하는 스프링과;	지지하는 스프링(29)([도 8])
6	상기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되고 상기	○ 상기 스크린 프레임의 가동 문틀이,

	스키시티카 메쉬티노 초바찬스크 코코	사라다시 왜 보게로 편이 보시 이번 만
	슬라이더가 배치되는 후방향으로 절곡	상하단에 캡 부재를 끼워 붙인 일정 단
	되어 상기 걸림홈에 선택적으로 삽입되	면의 종형재로 구성되고, 그 종형재에
	는 걸림부로 이루어지되,	수납 프레임에 있어서의 수용 프레임측
		에 맞닿는 본체부와, 그 본체부로부터
		그 수납 프레임의 전면측으로 연장되는
		조작부를 구비한 것으로 하고, … 상기
		본체부(25)에, 수용 프레임(12)에 형성
		한 래치(28)를 계합시키는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를 형성하였다(문단번호
		[0005], [0016]).
		○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는 래치
		(28)가 배치되는 후방향으로 절곡([도
		8])
7	상기 슬라이더는 상기 슬라이딩도어의	○ 래치(28)는 가동 문틀(16)의 슬라이
	슬라이딩방향에 대한 수직방향인 전후	딩방향에 대한 수직방향인 전후방향으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걸림부와 결합	로 이동하여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
	되며,	(25a)와 결합([도 8])
8	상기 슬라이더의 양측에는 가이드돌기	○ 래치(28)는 도 8에 상세하게 나타낸
	가 돌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이동공의	바와 같이, … 그 가압자(28a)의 내단
	양측에는 상기 가이드돌기가 삽입되고	측에 계합 갈고리(28b)가 돌출 형성되
	안내되는 가이드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어 있다(문단번호 [0018]).
		○ 가압자(28a)와 계합 갈고리(28b)의
		연결 부분의 형상에 맞추어 래치(28)
		이동 공간이 형성([도 8])
9	상기 가이드홈은 상기 지지부재의 후면	○ 가압자(28a)와 계합 갈고리(28b)의
	방향으로 개방되고 전면방향으로는 폐	연결 부분의 래치(28) 지지부재는 래치
	쇄되어 있어 상기 스프링의 탄성력에	(28)의 전면방향으로 폐쇄되어 있어 스
	의한 상기 가이드돌기의 전면방향 이동	프링의 탄성력에 의한 래치(28)의 전면
		_ 0 - 1 - 0 - 1 - 1 - 1 - 1 - 1 - 1 - 1 -

	거리를 제한하고,	방향 이동거리를 제한([도 8])
10	상기 슬라이더의 전면은 상기 스프링의	○ 래치가, 그 수용 프레임의 전면 측
	탄성력에 의해 상기 이동공을 관통하여	으로 돌출되도록 스프링 가압하여 형성
	돌출 형성되고,	된 가압자의 내단 측에 계합 갈고리를
		돌출 형성함으로써 구성되고(문단번호
		[0006])
		○ 래치(28)는 도 8에 상세하게 나타낸
		바와 같이, 그 수용 프레임(12) 내에서
		그 전면 측으로 출몰 가능하게 가이드
		되고, 그 수용 프레임(12) 내에 수용된
		스프링(29)에 의해 전면 측으로 돌출되
		도록 가압된 가압자(28a)를 구비하며
		(문단번호 [0018])
11	상기 스프링의 탄성복원력에 의해 상기	○ 그 래치가, 그 가압자(28a)의 비가압
	슬라이더의 전면에 형성된 상기 걸림홈	상태에서 그 계합 갈고리(28b)가 상기
	에 상기 걸림부가 삽입되고,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에 계합하고
		(문단번호 [0006], [0018])
12	상기 슬라이더의 전면을 상기 스프링	○ 그 래치가, 그 가압자(28a)의 가압에
	방향으로 누르면, 상기 스프링이 압축	의해 상기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
	되면서 상기 슬라이더의 전면에 형성된	와의 계합이 해제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상기 걸림홈은 상기 걸림부로부터 이탈	있다(문단번호 [0006], [0018]).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롤방충망의	○ 따라서,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록킹구조.	가동 문틀(16)의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
		(25a)에 계합 갈고리(28b)를 계합시킨
		상태에서 가압자(28a)를 가압하면, 상기
		계합 갈고리(28b)가 래치용 계합 가장
		자리(25a)로부터 벗어나, 스크린(15)이
		권취 방향으로 스프링 가압된 권취 축

3) 공통점 및 차이점의 분석

가) 구성요소 1

정정 후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은 '전후방향으로 개방된 프레임(10)[스크린 프레임(10)]이과 프레임(10)[스크린 프레임(10)]의 안쪽에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된 슬라이딩도어(20)[가동 문틀(16)]와 일단이 슬라이딩도어(20)[가동 문틀(16)]에 연결되고타단이 프레임(10)[스크린 프레임(10)]의 일측에 연결되어 슬라이딩도어(20)[가동 문틀(16)]의 이동시 권취되면서 프레임(10)[스크린 프레임(10)]으로부터 인출 또는 인입되는방충망(30)[스크린(15)]과 슬라이딩도어(20)[가동 문틀(16)]를 프레임(10)[스크린 프레임(10)]의 타측에 선택적으로 잠금 또는 해제하는 록킹부(40)[래치(28)]로 이루어진 롤방충망의 록킹구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었다).

나) 구성요소 2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는 록 킹부(40)[래치(28) 지지부재, 래치(28), 스프링(29),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가 슬라이딩도어(20)[가동 문틀(16) 및 수용 프레임(12)]의 가운데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 구성요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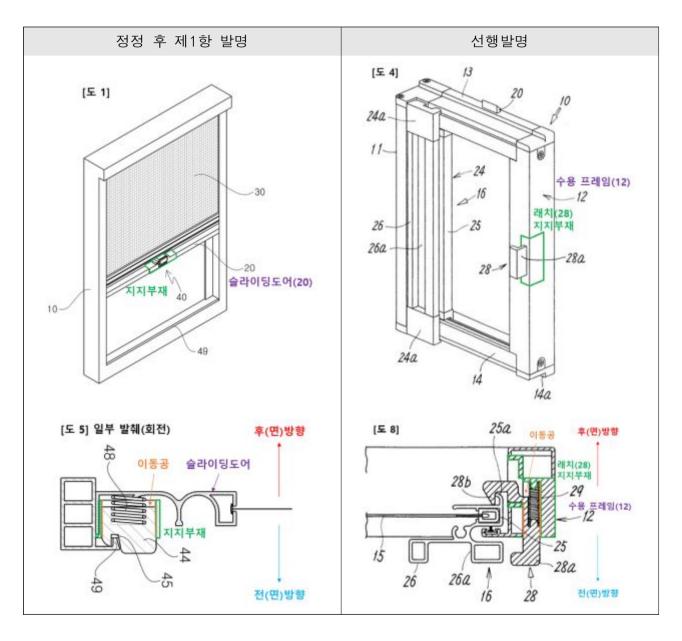
(1)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는

⁴⁾ 이하 '래치(28) 지지부재'라 한다.

⁵⁾ 이하 '이동공'이라 한다.

⁶⁾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괄호 안에 기재하였고,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아래 표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후방향으로 이동공(42)(이동공)이 관통하여 형성된 지지부재(41)[래치(28) 지지부재]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3의 지지부재(41)는 슬라이딩도어(20)에 고정 결합되는 반면, 선행발명의 래치(28) 지지부재는 수용 프레임(12)에 고정 결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에는 구성요소 3의 이동공(42)에 대응하는 구

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성요소 3의 이동공은 슬라 이더의 측면을 감싸 슬라이더가 안정적으로 전후 방향으로 슬라이딩 이동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구성인데. 선행발명의 [도 4]에는 수용 프레임(12)에 래치(28)를 지지하는 부 재가 형성되어 있고, [도 8]에는 래치(28) 지지부재에 래치(28)가 전후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해당 공간에서 래치(28)가 전후 방향으로 슬라이딩 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행발명의 해당 공간이 구성요소 3의 이동공(42)에 대응하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의 [도 8]에는 래치(28) 지지부재의 이동공이 래 치(28) 지지부재의 후면 방향으로는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5]에는 구성요소 3의 지지부재(41)의 이동공(42)도 후면 방향으로는 슼 라이딩도어(20)로 폐쇄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이동공(42)은 지지 부재(41)에 전방으로만 개방되게 형성될 수도 있으나, 본 실시예와 같이 지지부재(41) 에 전후방 모두가 개방되도록 관통형성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문단번호 [0034])."라고 기재되어 있어 후방이 폐쇄된 경우도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 이므로, 선행발명은 구성요소 3의 전후방향으로 이동공이 관통하여 형성된 지지부재에 대응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구성요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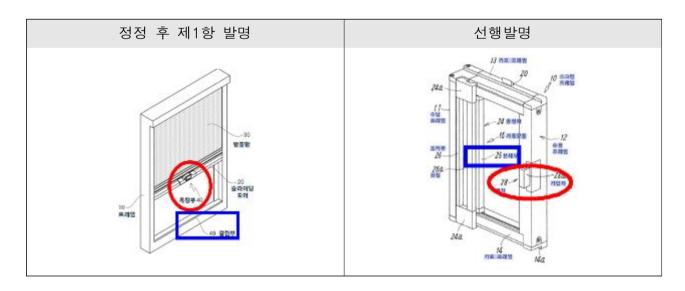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는 이동공(42)(이동공)에 전후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되고, 걸림홈(45)[계합 갈고리(28b)]이 형성된 슬라이더(44)[래치(28)]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4의 걸림홈(45)은 슬라이더(44)의 전면에 형성된 반면, 선행발명의 계합 갈고리(28b)는 가압자(28a)의 내단 측에 돌출 형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마) 구성요소 5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는 슬라이더(44)[래치(28)]의 후면에 배치되어 슬라이더(44)[래치(28)]를 방충망(30)[스크린(15)]의 반대방향으로 탄성지지하는 스프링(48)[스프링(29)]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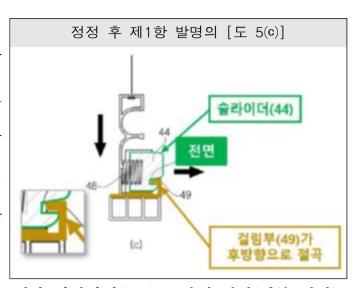
바) 구성요소 6

(1)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는 슬라이더(44)[래치(28)]가 배치되는 후방향으로 절곡되어 걸림홈(45)[계합 갈고리(28b)]에 선택적으로 삽입되는 걸림부(49)[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아래 표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요소 6의 걸림부(49)는 프레임(10)의 타측에 형성되는 반면, 선행발명의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는 가동 문틀(16)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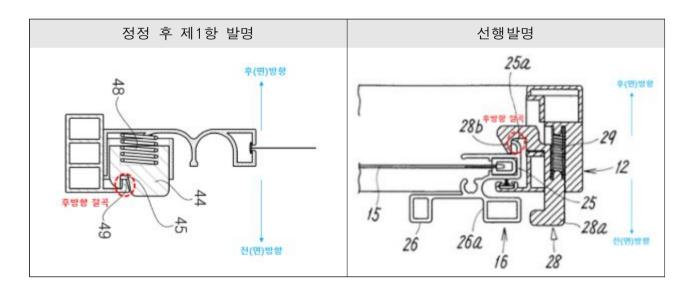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성요소 6은 걸림부가 후방향(내부 방향)으로 절곡되

어 있어 오른쪽 표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걸림부가 걸림홈에 결합된 상태에서는 걸림부가 슬라이더 중 걸림홈이 형성된 부분을 보호하므로 외부충격에 의해 록 킹부의 잠금상태가 임의로 해제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는 반 면, 선행발명은 계합 갈고리(28b)가 외



측에 형성되어 있어 선행발명의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는 반대 방향(외부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고 정정 후 제1항 발명과 같은 작용효과가 없으므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표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행발명의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도 후방향으로 절곡되어 계합 갈고리(28b)에 삽입되므로 구성요소 6의 걸림부(49)에 대응하는 구성을 갖고 있고,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가 계합 갈고리(28b)에 삽입되는 부

분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쉽게 잠금이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원고는 선행발명의 경우 실외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결합이 해제될 위험이었다고도 주장하나, 스프링과 래치의 위치, 스프링의 탄성력이 가해지는 방향을 고려하면 실외로부터 계합 갈고리에 충격이 가해져 계합 갈고리와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의결합이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행발명은 후방향으로 절곡된 걸림홈에 대응하는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 구성요소 7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7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는 슬라이더(44)[래치(28)]가 슬라이딩도어(20)[가동 문틀(16)]의 슬라이딩방향에 대한 수직방향인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여 걸림부(49)[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와 결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아) 구성요소 8, 9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8, 9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는 스프링(48)(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한 가이드돌기(46)[래치(28)]의 전면방향 이동거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8, 9는 슬라이더(44)의 양측에는 가이드돌기(46)가 돌출 형성되어 있고, 이동공(42)의 양측에는 가이드돌기(46)가 삽입되고 안내되는 가이드홈(43)이 형성되어 있으며, 가이드홈(43)은 지지부재(41)의 후면방향으로 개방되고 전면방향으로는 폐쇄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은 이동공의 내단 측에 래치(28)의 가압자(28a)와 계합 갈고리(28b)가 연결되면서 계합 갈고리(28b)가 안내되는 부분의 형상에 맞추어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위 개방 부분은 전면방향과 후면방향으로 폐쇄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4'라 한다).

자) 구성요소 10, 11, 12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0, 11, 12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는 슬라이더(44)[래치(28)]의 전면은 스프링(48)(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 이동공(42)을 관통하여 돌출 형성되고, 스프링(48)(스프링)의 탄성복원력에 의해 슬라이더(44)[래치(28)]의 전면에 형성된 걸림홈(45)[계합 갈고리(28b)]에 걸림부(49)[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가 삽입되고, 슬라이더(44)[래치(28)]의 전면을 스프링(48)(스프링) 방향으로누르면, 스프링(48)이 압축되면서 슬라이더(44)[래치(28)]의 전면에 형성된 걸림홈(45)[계합 갈고리(28b)]은 걸림부(49)[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로부터 이탈된다는 점에서실질적으로 동일하다.

4) 차이점에 대한 검토

먼저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관하여 본다.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종래의 권취식 방충망은 슬라이더(4)를 고정시키는 고정부(5)가 슬라이더(4)의 양측을 지지하는데, 장시간 사용시 방충망(3)을 잡아당기는 권취수단의 힘에 의해 슬라이더(4)의 중심부가 상방향으로 휘어지게 변형되어 걸림돌기(4a)가 걸림턱(5a)에 잘 결합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었고,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발명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0004]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근래에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권취수단을 구비하는 프레임(1)과, 상기 프레임(1)의 일측에 출몰가능하게 탄력적으로 내장되는 방충망(3)과, 상기 방충망(3)에 연결되는 슬라이딩도어(2)와, 상기 슬라이딩도어(2)에 전후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장착된 슬라이더(4)와, 상기 슬라이더(4)를 전방으로 탄성지지하는 판스프링(6)과, 상기 슬라이더(4)를 고정시키는 고정부(5)로 구성된 권취식 방충망이 제시되었다(등록실용신안 제20-0389392호 참조).

[0009]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권취식 방충망은, 슬라이더(4)의 양측을 고정부(5)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u>장시간 사용시 상기 방충망(3)을 잡아당기는 권취수단의 힘에 의해 상기 슬라이더(4)의 중심부가 상방향으로 휘어지게 변형되어 걸림돌기(4a)가 걸림턱(5a)에 잘</u>결합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0010]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u>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이용하여 슬라이딩되어 인출되는 방충망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고,</u> 또한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으며, 외부충격에 의해 임의로 잠금상태가 해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롤방충망의 록킹구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종래 기술과 달리 록킹부의 지지부재와 슬라이더와 스프 링을 슬라이딩도어의 가운데에, 걸림부를 프레임의 타측에 각 형성하여(구성요소 2, 차이점 1, 3) 록킹구조를 간단하게 하면서도 이 경우 권취수단으로부터 작용하는 힘이집중되어 슬라이더가 휘어져 변형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 지지부재(41)에 전후방향으로 이동공(42)을 관통하여 형성하고 걸림홈을 슬라이더의 전면에 형성하여 슬라이더를 이동공(42)에 전후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하고(구성요소 3, 4, 차이점 2), ② 슬라이더의 양측에는 가이드돌기를 돌출 형성하고, 이동공의 양측에는 지지부재의 후면방향으로는 개방되고 전면방향으로는 폐쇄된 가이드홈을 형성하였다(구성요소 8, 차이점 4).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③과 같은 구성으로 @ 록킹구조가 간단해졌고, ⑤ 이동공이 형성된 지지부재가 슬라이더의 측면을 감싸면서 권취수단으로부터 작용하는 힘을 슬라이더 전체로 분산시키므로 방충망이 장기간 전개 되어 권취수단의 힘이 장기간 슬라이더에 작용하여도 슬라이더가 휘어져 변형되는 문 제가 발생하지 않아 방충망을 견고하게 장시간 고정되도록 할 수 있으며, ⓒ 슬라이더 는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동공 전후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슬라이딩 이동을 할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다. 또한 ①과 같은 구성으로 ②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한 슬라이더의 전면방향 이동거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⑤ 슬라이더의 전후방향 이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0016] 상기 슬라이더는 상기 슬라이딩도어의 슬라이딩방향 즉 상하방향에 대한 수직방향인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여 후방향으로 절곡된 상기 걸림부와 결합되어 상기 방충망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u>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이용하여 슬라이딩되어 인출되는 방충망을</u>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고, 또한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다.

[0017] 즉, 상기 걸림부는 상기 슬라이더가 배치되는 후방향으로 절곡되어 있고, 상기 슬라이더는 이러한 상기 걸림부가 삽입되는 걸림홈이 전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u>상기</u> 방충망이 장기간 전개되어 권취수단의 힘이 상기 슬라이딩도어에 작용하여도 상기 슬라이더가 휘어져 변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기 슬라이더가 걸림부로부터 쉽게 분리해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인출된 방충망이 견고하게 장시간 고정되도록 할 수 있다.

[0018] 뿐만 아니라, 외부충격에 의해 록킹부의 잠금상태가 임의로 해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0037] 따라서, 상기 슬라이더(44)는 상기 가이드돌기(46)가 상기 가이드홈(43)에 삽입되어 안내됨으로써, <u>상기 슬라이더(44)는 상기 지지부재(41)에서 전후방향으로 안정적으로</u> 슬라이딩되게 된다.

[0056] 이때, 상기 가이드돌기(46)는 가이드홈(43)을 따라 안내되면서 <u>상기 슬라이더</u> (44)가 상기 지지부재(41)의 이동공(42)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0060] 상기 걸림부(49)는 상기 슬라이더(44)가 배치되는 후방향으로 절곡되어 있고, 상기 슬라이더(44)는 이러한 상기 걸림부(49)가 삽입되는 걸림홈(45)이 전면에 형성되어 있 기 때문에, <u>상기 방충망(30)이 장기간 전개되어 권취수단의 힘이 상기 슬라이딩도어(20)에</u> 작용하여도 상기 슬라이더(44)가 휘어져 변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기 슬라이더(44) 가 걸림부(49)로부터 쉽게 분리해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인출된 방충망(30)이 견고하 게 장시간 고정되도록 할 수 있다.

[0064] 위와 같이, 상기 슬라이더(44)는 상기 슬라이딩도어(20)의 슬라이딩방향 즉 상

하방향에 대한 수직방향인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걸림부(49)와 결합되어 상기 방충망(30)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u>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이용하여 롤형태의 방충망(30)</u>으로 안정적으로 잠금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지지부재, 슬라이더를 슬라이딩도어의 가운데에, 걸림부를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하는 구성', '슬라이더의 전면에 걸림홈을 형성하는 구성', '슬라이더의 양측에 가이드돌기를, 이동공의 양측에 가이드홈을 형성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스크린 프레임(10)을 유닛화하여 이를 새시 프레임(1)의 실내 측에 장착하는 경우, 좌우의 세로 프레임의 일방을스크린의 수납 프레임으로 하고 타방을 수용 프레임으로 하는데, 수납 프레임(11)의 내부에 스크린(15)을 수납할 공간을 갖기 때문에 수용 프레임(12)에 비해 수납 프레임(11)의 가로 폭이 커지고, 스크린(15)을 수납 프레임(11)에 수납하면 수납 프레임(11)에 가동 문틀(16)이 중첩되어 이들을 합한 가로 폭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새시 프레임(1)에 의해 제한된 시야를 더욱 차단하는 문제점이 있고, 선행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발명이다.

[선행발명의 명세서]

[0002] 최근, 방충이나 꽃가루 방지 네트, 혹은, 차광 기타 목적의 스크린을 건물 개구 부에 설치하기 위한 스크린 장치는 그 디자인이나 기능의 향상에 수반하여. 실내 집기(調度 品)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러, 이를 건물 개구부에 설치하는 새시 프레임의 내측에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u>이 스크린을 설치하기 위한 스크린 프레임을, 건물 개구부에 있어서의 새시 프레임의 내측에 장착하는 경우,</u> 그 스크린 프레임을, 새시 프레임에 대해 직접 또는 적절한 장착 브래킷 등을 통해 나사 고정이나 양면 접착 테이프로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스크린 프레임이 실내 측으로 돌출되고, 게다가 <u>새시 프레임에 의해 제한된 건물 개구부로부터의 시야를 더욱 차단하는 경우가 많고,</u> 이 때문에, 실내 공간의 쾌적함을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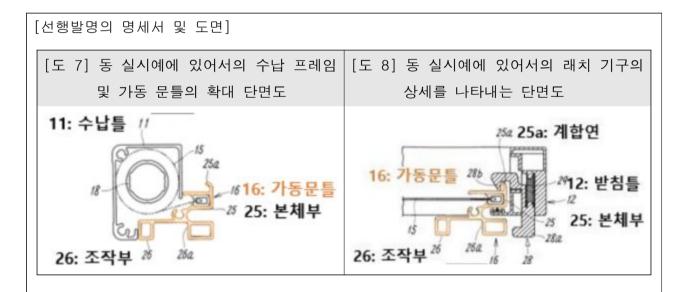
[0003] 본 발명의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스크린 프레임을, 그것이 상기 새시 프레임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u>새시 프레임에 의해 얻어진 시야를 가급적 차단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에 있다.</u>

[0008] 또한, 상기 스크린 프레임을 유닛화하는 경우, 좌우의 세로 프레임의 일방을 스크린의 수납 프레임으로 하고, 타방을 그 스크린의 일단이 연결되어 그 스크린의 개폐 조작을 행하는 가동 문틀의 수용 프레임으로 하는데, 그 경우에, 스크린의 수납 프레임 쪽이 내부에 스크린의 수납 공간을 가지기 때문에, 수용 프레임에 비해 가로 폭이 커지고, 게다가, 스크린을 그 수납 프레임에 수납했을 때는 그 수납 프레임에 가동 문틀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들을 합한 가로 폭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스크린 프레임을, 새시 프레임에 의해 얻어진 시야를 가급적 차단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스크린 프레임에 가동 문틀이 겹쳐진 상태에서의 가로 폭을 가급적 작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의 명세서 기재 및 도면의 도시에 의하면, 선행발명은 가동 문틀(16)이 슬라이딩 이동하면서 스크린을 수납 프레임으로부터 인출 또는 인입시키는데, ② 스크린을 둥글게 말아 수납 프레임에 수납하면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가동 문틀이 수납 프레임에 접하고, 그 상태에서 가로 폭을 비교적 좁게 하기 위하여가동 문틀에 수납 프레임의 전면의 가로 폭의 반 이상을 덮어 가로 폭을 비교적 넓게할 수 있는 '조작부(26)'를 구비하되, 조작부에는 가동 문틀의 개페를 조작하는 손잡이걸이용 요철을 형성하고, ⑤ 스크린을 펼치면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동 문틀은수용 프레임에 접하고, 가동 문틀에 스크린이 위치하는 '본체부(25)'를 구비하되, 본체

부에는 수용 프레임(12)에 형성된 계합 갈고리(28b)와 결합하는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 (25a)를 형성하였다.

선행발명은 이러한 조작부(26) 구성으로 가동 문틀(16)이 수납 프레임(11)에 접하더라도 가로 폭을 비교적 작게 할 수 있어 새시 프레임(1)에 의해 형성된 시야를 가급적 차단하지 않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선행발명의 가동 문틀(16)의 구성은 수납 프레임(11), 수용 프레임(12), 래치(28) 등 선행발명의 나머지 구성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가동 문틀을 쉽게 조작하고 래치에 결합시킬 수 있는효과를 가지게 된다.



[0005] 본 발명에 관한 스크린 프레임의 장착 구조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상기 스크린 프레임의 가동 문틀이, 상하단에 캡 부재를 끼워 붙인 일정 단면의 종형재로 구성되고, 그 종형재에 수납 프레임에 있어서의 수용 프레임 측에 맞닿는 본체부와, 그 본체부로부터 그 수납 프레임의 전면 측으로 연장되는 조작부를 구비한 것으로 하고, 상기 종형재에서의 조작부에, 그 길이 방향을 따라, 가동 문틀의 개폐 조작을 위한 손가락걸이에 제공하는 손가락걸이용 요철을 형성함과 함께, 상기 본체부에, 수용 프레임에 형성한 래치를 계합시키는 <u>래치용 계합 가장자리를 형성하고</u>, 상기 스크린 프레임에서의 상부 및 좌우의 안치수가, 적어도 새시 프레임에서의 각각의 안치수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큰 것으로 형

성된다. 이 경우에, 상기 가동 문틀의 조작부가, 상기 스크린 프레임의 수납 프레임에 대한 스크린의 전체 수납 상태에 있어서, 그 수납 프레임의 전면에 있어서의 개구 측의 절반 이 상을 덮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0009]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이, <u>가동 문틀을</u> 수납 프레임에서의 수용 프레임 측에 맞닿는 <u>본체부와</u>, 그 본체부로부터 그 수납 프레임의 전면 측으로 연장되는 <u>조작부를 구비한 것으로 하면, 수납 프레임에 가동 문틀을 겹친 상태에서의 이들의 가로 폭을 비교적 작게 할 수 있고, 게다가, 그 가동 문틀의 종형재에 있어서의 상기 조작부 자체의 가로 폭은 비교적 크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 문틀의 개폐 조작을 위한 손가락걸이용 요철을 형성할 여유도 충분히 존재하여, 설계상이나 외관상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고, 결과적으로, 상기 스크린 프레임에 있어서의 상부 및 좌우의 안치수를, 적어도 새시 프레임에서의 각각의 안치수와 동등하거나 그것보다 큰 것으로 하여 형성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이 경우, 상기가동 문틀의 조작부는 상기 스크린 프레임의 수납 프레임의 전면에 있어서의 가로 폭의 절반 이상을 덮도록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스크린 프레임에 있어서의 하방의 가로 프레임은 그것이 새시 프레임의 하부 프레임보다 돌출되어 있어도, 그것이 건물 개구부의 시야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스크린 프레임의 상부 및 좌우의 안치수와 마찬가지로 배려할 필요는 없다.</u>

[0010] 상기 스크린 프레임을, 그것이 상기 새시 프레임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새시 프레임에 의해 얻어진 시야를 가급적 차단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스크린 프레임을 장착해도 실내 공간의 쾌적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0016] 도 4, 도 7 및 도 8에 명료하게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스크린 프레임(10)에 있어서의 가동 문틀(16)은 상하단에 캡 부재(24a)를 끼워 붙인 일정 단면 형상의 종형재(24)에 의해 구성되고, 그 종형재(24)를 수납 프레임(11)에서의 수용 프레임(12) 측에 맞닿는 본체부(25)와, 그 본체부(25)로부터 그 수납 프레임(11)의 전면 측으로 연장되는 조작부(26)를 일체로 구비한 것으로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종형재(24)에 있어서의 조작부(26)에, 그 길이 방향을 따라, 가동 문틀의 개폐 조작을 위한 손가락걸이에 제공하는 손가락걸이용 요철(26a)을 형성함과 함께, 상기 종형재(24)에 있어서의 상기 본체부(25)에, 수용 프레임(12)에 형성한 래치(28)를 계합시키는 <u>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를 형성하였다.</u> 상기 가동 문틀(16)의 조작부(26)는 상기 스크린 프레임(10)의 수납 프레임(11)에 대한스크린(15)의 전체 수납 상태에 있어서, 그 수납 프레임(11)의 전면에 있어서의 개구 측의절반 이상을 덮도록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17] 상술한 바와 같이, 스크린 프레임(10)을 유닛화하여 이를 새시 프레임(1)의 내측에 장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스크린(15)의 수납 프레임(11)이 내부에 스크린(15)의 수납 공간을 갖기 때문에 수용 프레임(12)에 비해 가로 폭이 커지고, 게다가 스크린(15)을 그수납 프레임(11)에 수납했을 때는 그 수납 프레임(11)에 가동 문틀(16)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들을 합한 가로 폭이 더욱 커지게 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가동 문틀(16)의 종형재(24)를, 수납 프레임(11)에서의 수용 프레임(12) 측에 맞닿는 본체부(25)와, 그 본체부(24)로부터 그 수납 프레임(11)의 전면 측으로 연장되는 조작부(26)를 일체로 구비한 것으로서 구성하고, 상기 조작부(26)가 수납 프레임(11)의 전면의 절반 이상을 덮도록 형성하면, 수 날 프레임(11) 측에 가동 문틀(16)이 있어도 그들의 가로 폭이 그다지 커지는 일은 없고, 게다가, 상기 조작부(26)에 어느 정도의 폭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 문틀(16)의 개폐 조작을 위한 손가락걸이용 요철(26a)을 형성하는 영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스크린 프레임(10)에 가동 문틀(16)이 겹친 상태에서의 가로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스크린 (15)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스크린 프레임(10)을 새시 프레임(1)에 의해형성되어 있는 시야를 가급적 차단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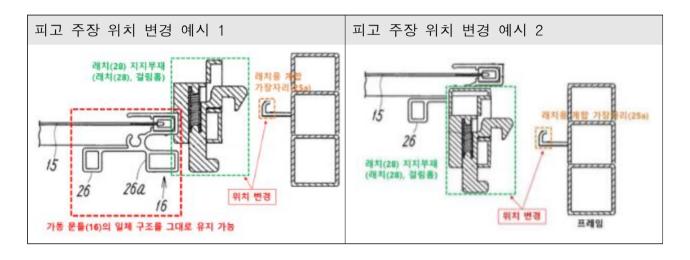
[0019] 스크린 프레임(10)을 유닛화하여 이를 새시 프레임(1)의 실내 측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스크린 프레임(10)을, 새시 프레임(1)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시야를 가급적 차단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성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가동 문틀(16)을 수납 프레임(11)에서의 수용 프레임(12) 측에 맞닿는 본체부(25)와, 그 본체부(25)로부터 그 수납프레임(11)의 전면측으로 연장되는 조작부(26)를 구비한 것으로 함으로써, 수납 프레임(11)에 가동 문틀(16)을 겹친 상태에서의 이들의 가로 폭을 비교적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스크린 프레임(10)에서의 상부 및 좌우의 안치수를, 적어도 새시 프레임(1)에 있어서의 각각의 안치수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큰 것으로서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스크린 프레임(10)을 설치하는 것에 의해 실내 공간의 쾌적함을 해치지 않는다.

정정 후 제1항 발명 중 '지지부재와 슬라이더와 스프링과 걸림부'는 선행발명의 '래치(28) 지지부재와 래치(28)와 스프링과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에 대응하는데, 이들 구성은 스프링의 탄성복원력에 의해 걸림부가 걸림홈에 삽입되거나 스프링을 압축시켜 걸림홈이 걸림부로부터 이탈된다는 점에서 작동원리가 공통된다. 그러나 정정후 제1항 발명은 지지부재, 슬라이더 및 스프링이 슬라이딩도어의 가운데에 형성되고

걸림부가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되는 것임에 비하여, 선행발명은 래치(28) 지지부재, 래치(28), 스프링이 프레임의 타측에 대응하는 수용 프레임의 가운데에 형성되고 래치용계합 가장자리(25a)가 슬라이딩도어에 대응하는 가동 문틀(16)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정정 후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있다.

선행발명의 래치(28) 지지부재, 래치(28). 스프링을 가동 문틀(16)에 형성하고, 래 치용 계합 가장자리(25a)를 수용 프레임에 형성하면 정정 후 제1항 발명과의 위와 같 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선행발명은 새시 프레임에 스크린 프레임을 설치하면서도 새시 프레임에 의해 얻어진 시야를 가급적 차단하지 않 는 스크린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하여 스크린 프레임에 가동 문틀이 겹쳐진 상태에서 가동 문틀의 가로 폭을 가급적 좁게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인데,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의 전체적인 기재를 통해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동 문틀의 단면이 조작부는 넓게, 본체부는 좁게 형성하여 넓은 조작부에는 손가락 걸이용 요철을, 좁은 본체부에는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를 각 형성하였다는 점을 합리 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지지부재(41)를 슬라이딩도어 (20)에 고정결합하기 위하여 슬라이딩도어(20)에 장착홈을 형성하고(문단번호 [0033]). 정정 후 제1항 발명과 같이 선행발명의 래치(28) 지지부재, 래치(28), 스프링 및 장착홈 에 대응하는 구성을 가동 문틀(16)에 형성하면, 가동 문틀의 가로 폭을 좁게 형성할 수 없다. 따라서 선행발명의 래치(28) 지지부재, 래치(28), 스프링과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 의 형성 위치를 교환하는 시도는 선행발명의 기술적 과제에 반하는 것이거나 선행발명 의 본래의 기술적 의의를 잃게 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내기 어 렵다고 보인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표에 도시된 것과 같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에서 래치(28) 지지부재, 래치(28), 스프링을 가동 문틀(16)로,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를 수용 프레임으로 그 형성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아래 표 왼쪽과 같이 변경하면가동 문틀의 본체부와 조작부 구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가동 문틀의 기술적 의의를 잃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왼쪽과 같이 래치(28)와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의 형성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동 문틀의 조작부와 본체부 구성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동 문틀이 스크린 프레임에 접하는 상태에서 래치(28) 지지부재, 래치(28), 스프링으로 인하여가동 문틀의 가로 폭이 넓어져 시야를 차단하고,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오른쪽과 같이 변경하는 경우 손가락걸이용 요철(26a)을 제거하여야 하고 래치, 래치 지지부재가 전방으로 돌출하게 되므로, 래치(28)와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의 형성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다.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지지부재(41)에 전후방향으로 이동공(42)을 관통하여 형성하고 슬라이더(44)를 이동공(42)에 전후방향으로 슬라이딩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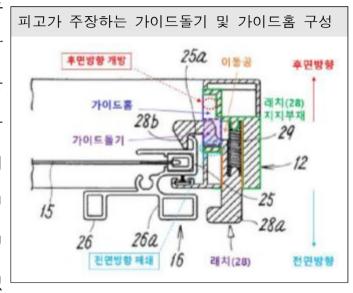
능하게 장착하면서 슬라이더(44)의 전면에 걸림홈(45)을 형성하여 권취수단으로부터 작용하는 힘을 슬라이더 전체로 분산시켜 방충망을 견고하게 장시간 고정되도록 하였다.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방충망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록킹구조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지부재(41)에 형성하는 이동공(42)의 형상, 슬라이더(44)와 지지부재(41)의 장착 구조, 걸림홈(45)의 형성위치를 이용하는 것을 그 해결수단으로 채택한 것인데, 슬라이더(44)의 전면에 걸림홈(45)을 형성하는 구성이 나머지 구성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방충망을 견고하게 고정시킨다는 특유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한편 결합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성이나 권취수단으로부터 계합 갈고리(28b)에 작용하는 힘이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은 선행 발명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가 구조의 단순화 및 견고한 고정력을 위하여 정정 후 제1 항 발명처럼 지지부재(41)에 이동공(42)을 관통하여 형성하고 슬라이더(44)를 이동공(42)에 장착하면서 슬라이더(44)의 전면에 걸림홈(45)을 형성하도록 그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특유한 효과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하기 어렵다.

④ 차이점 4는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슬라이더(44)의 양측에는 가이드돌기(46)가 돌출 형성되어 있고, 이동공(42)의 양측에는 가이드홈(43)이 형성되어 있으며, 가이드홈(43)은 지지부재(41)의 후면방향으로 개방되고 전면방향으로는 폐쇄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은 이동공의 내단 측에 래치(28)의 가압자(28a)와 계합 갈고리(28b)가 연결되면서 계합 갈고리(28b)가 안내되는 부분에 그 형상에 맞추어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그

공간은 전면방향과 후면방향으로 폐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른쪽 표에 보라색으로 도시된 '래치(28)의 가압자(28a)와 계합 갈고리(28b)가 연결되는부분'은 가이드돌기(46)에 대응하는 구성, 파란색으로 도시된 '그 후면 방향의공간'은 가이드홈(43)에 대응하는 구성이고, 선행발명은 정정 후 제1항 발명과 그 형상 및 형성 위치에 차이가 있



을 뿐 이러한 계합 갈고리(28b)의 구조를 이용하여 래치(28)의 전면방향 이동거리를 제한하여 정정 후 제1항 발명과 동일한 기능을 하므로, 선행발명으로부터 가이드돌기(46) 및 가이드홈(43)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가이드돌기(46) 및 가이드홈 (43) 구성은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한 슬라이더(44)의 전면방향 이동거리를 제한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슬라이더(44)가 안정적으로 전후방향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므로,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위와 같은 구성이 특유한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효과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하기 어렵다. 선행발명이 위와 같이 계합 갈고리(28b)의 구조를 이용하여 래치(28)의 전면방향 이동거리를 제한하므로, 선행발명은 가이드홈 및 가이드돌기 구성을 채용할 필요성이 없어 선행발명으로부터 가이드돌기(46) 및 가이드홈(43)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선행발명은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가 가동 문틀(16)의 슬라이딩방향으로,

계합 갈고리(28b)가 슬라이딩방향에 대한 수직방향인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여 래치용계합 가장자리(25a)와 계합 갈고리(28b)가 결합하지만,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고정된 프레임(10)의 타측에 걸림부(49)를 형성하고 이동하는 슬라이딩도어(20)에 슬라이더(44)를 형성하여 슬라이더(44)에 형성된 걸림홈(45)이 슬라이딩도어(20)의 슬라이딩방향에 대한 수직방향인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여 걸림홈(45)과 걸림부(49)가 결합하도록 한다. 따라서 선행발명은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와 계합 갈고리(28b)가 모두 이동하여 록 킹부의 잠금상태가 임의로 해제될 수 있으나,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전후방향으로 이동하는 슬라이더(44)의 형성 위치를 슬라이딩도어(20)의 가운데로 구성하면서 걸림홈(45)만 이동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록킹부의 잠금상태가 임의로 해제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결합하도록 하는 개선된 효과도 있다.

5) 검토 결과 정리

그렇다면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또는 선행발명에 주지관용기술을 참고하여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정정 후 제3, 4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종속항인 정정 후 제 3, 4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5항에서 정한 정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

[별지]

선행발명

발명의 명칭: 건물 개구부용 새시 프레임에 대한 스크린 프레임의 장착 구조

개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건물 개구부용 새시 프레임에 방충망 등의 스크린 프레임을 장착하기 위한 장착 구조에 관한 것이다.

대 배경기술

[0002] 최근, 방충이나 꽃가루 방지 네트, 혹은, 차광 기타 목적의 스크린을 건물 개구부에 설치하기 위한 스크린 장치는 그 디자인이나 기능의 향상에 수반하여, 실내 집기(調度 品)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러, 이를 건물 개구부에 설치하는 새시 프레임의 내측에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스크린을 설치하기 위한 스크린 프레임을, 건물 개구부에 있어서의 새시 프레임의 내측에 장착하는 경우, 그 스크린 프레임을, 새시 프레임에 대해 직접 또는 적절한 장착 브래킷 등을 통해 나사 고정이나 양면 접착 테이프로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스크린 프레임이 실내측으로 돌출되고, 게다가 새시 프레임에 의해 제한된 건물 개구부로부터의 시야를 더욱 차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실내 공간의 쾌적함을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 해결하려는 과제

[0003]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상기 스크린 프레임을 유닛화하고, 이를 새시프레임에 대해 용이하게 탈부착 가능하게 하여, 메인터넌스성이나 시공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불사용시에도 용이하게 제거하여 실내 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한 건물 개구부용 새시 프레임에 대한 스크린 프레임의 장착 구조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스크린 프레임을, 그것이 상기 새시 프레임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새시 프레임에 의해 얻어진 시야를 가급적 차단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에 있다.

래 과제의 해결 수단

[0005] 본 발명에 관한 스크린 프레임의 장착 구조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상기 스크린 프레임의 가동 문틀이, 상하단에 캡 부재를 끼워 붙인 일정 단면의 종형재로 구성되고, 그 종형재에 수납 프레임에 있어서의 수용 프레임 측에 맞닿는 본체부와, 그 본 체부로부터 그 수납 프레임의 전면 측으로 연장되는 조작부를 구비한 것으로 하고, 상기 종 형재에서의 조작부에, 그 길이 방향을 따라, 가동 문틀의 개폐 조작을 위한 손가락걸이에 제공하는 손가락걸이용 요철을 형성함과 함께, 상기 본체부에, 수용 프레임에 형성한 래치를 계합시키는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를 형성하고, 상기 스크린 프레임에서의 상부 및 좌우의 안치수가, 적어도 새시 프레임에서의 각각의 안치수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큰 것으로 형성된다. 이 경우에, 상기 가동 문틀의 조작부가, 상기 스크린 프레임의 수납 프레임에 대한스크린의 전체 수납 상태에 있어서, 그 수납 프레임의 전면에 있어서의 개구 측의 절반 이상을 덮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0006]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상기 스크린이, 상기 수납 프레임 내에서 권취 방향으로 스프링 가압된 권취 축에 권취 가능하게 형성된 것으로, 수용 프레임에 형성되어 가동 문틀의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에 계탈하는 래치가, 그 수용 프레임의 전면 측으로 돌출되도록 스프링 가압하여 형성된 가압자의 내단 측에 계합 갈고리를 돌출 형성함으로써 구성되고, 그 래치가, 그 가압자의 비가압 상태에서 그 계합 갈고리가 상기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에 계합하고, 그 가압자의 가압에 의해 상기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와의 계합이 해제되는 것으로 구성된다.

[0008] 또한, 상기 스크린 프레임을 유닛화하는 경우, 좌우의 세로 프레임의 일방을 스크린의 수납 프레임으로 하고, 타방을 그 스크린의 일단이 연결되어 그 스크린의 개폐 조작을 행하는 가동 문틀의 수용 프레임으로 하는데, 그 경우에, 스크린의 수납 프레임 쪽이 내부에 스크린의 수납 공간을 가지기 때문에, 수용 프레임에 비해 가로 폭이 커지고, 게다가, 스크린을 그 수납 프레임에 수납했을 때는 그 수납 프레임에 가동 문틀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들을 합한 가로 폭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스크린 프레임을, 새시 프레임에 의해 얻어진 시야를 가급적 차단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스크린 프레임에 가동 문틀이 겹쳐진 상태에서의 가로 폭을 가급적 작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

[0009]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이, 가동 문틀을 수납 프레임에서의 수용 프레임 측에 맞닿는 본체부와, 그 본체부로부터 그 수납 프레임의 전면 측으로 연장되는 조작부를 구비한 것으로 하면, 수납 프레임에 가동 문틀을 겹친 상태에서의 이들의 가로 폭을 비교적 작게 할 수 있고, 게다가, 그 가동 문틀의 종형재에 있어서의 상기 조작부 자체의 가로 폭은 비교적 크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 문틀의 개폐 조작을 위한 손가락걸이용 요철을 형성할 여유도 충분히 존재하여, 설계상이나 외관상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고, 결과적으로, 상기 스크린 프레임에 있어서의 상부 및 좌우의 안치수를, 적어도 새시 프레임에서의 각각의 안치수와 동등하거나 그것보다 큰 것으로 하여 형성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이 경우, 상기가동 문틀의 조작부는 상기 스크린 프레임의 수납 프레임의 전면에 있어서의 가로 폭의 절

반 이상을 덮도록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스크린 프레임에 있어서의 하방의 가로 프레임은 그것이 새시 프레임의 하부 프레임보다 돌출되어 있어도, 그것이 건물 개구부의 시야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스크린 프레임의 상부 및 좌우의 안치수와 마찬가지로 배려할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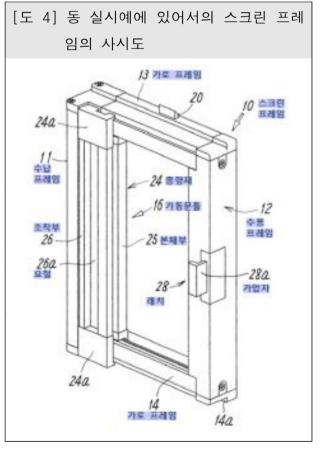
매 발명의 효과

[0010] 상술한 본 발명에 의하면, 스크린 프레임을 유닛화하고, 이를 새시 프레임에 대해 용이하게 탈부착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터넌스성이나 시공성이 개선됨과 동시에, 비교적 장기에 걸친 스크린의 불사용시에도 그 스크린 프레임을 용이하게 제거하여 실내 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상기 스크린 프레임을, 그것이 상기 새시 프레임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새시 프레임에 의해 얻어진 시야를 가급적 차단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크린 프레임을 장착해도 실내 공간의 쾌적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때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3] 상기 새시 프레임(1)에 탈부착 가 능하게 부착되는 스크린 프레임(10)은 좌우의 세로 프레임의 일방을 스크린(15)의 수납 프 레임(11)으로 하고, 그 타방을 그 스크린(15) 의 일단이 연결되어 그 스크린(15)의 개폐 조 작을 행하는 가동 문틀(16)의 수용 프레임 (12)으로 하며, 그들 수납 프레임(11) 및 수 용 프레임(12)을, 상기 가동 문틀(16)의 상하 단을 가이드하는 상하의 가로 프레임(13, 14) 에 의해 연결함으로써,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은 유닛으로서 구성하고 있다. 상기 수납 프레임(11)은 그 내부에, 스크린(15)을 권취 하기 위한 당해 권취 방향으로 스프링 가압 된 회전 가능한 권취 축(18)을 구비하고, 이 에 의해 스크린(15)을 그 권취 축(18)에 권취 가능하게 형성한 주지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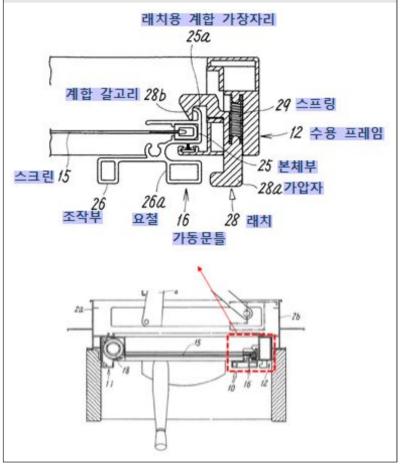
[0016] 도 4, 도 7 및 도 8에 명료하게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스크린 프레임(10)에 있어서의 가동 문 틀(16)은 상하단에 캡 부재(24a) 를 끼워 붙인 일정 단면 형상의 종형재(24)에 의해 구성되고, 그 종형재(24)를 수납 프레임(11)에 서의 수용 프레임(12) 측에 맞닿 는 본체부(25)와, 그 본체부(25) 로부터 그 수납 프레임(11)의 전 면 측으로 연장되는 조작부(26) 를 일체로 구비한 것으로서 구성 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종형재 (24)에 있어서의 조작부(26)에. 그 길이 방향을 따라, 가동 문틀 의 개폐 조작을 위한 손가락걸이 에 제공하는 손가락걸이용 요철 (26a)을 형성함과 함께. 상기 종 형재(24)에 있어서의 상기 본체 부(25)에, 수용 프레임(12)에 형 성한 래치(28)를 계합시키는 래 치용 계합 가장자리(25a)를 형성 하였다. 상기 가동 문틀(16)의 조작부(26)는 상기 스크린 프레

[도 8] 동 실시예에 있어서의 래치 기구의 상세를 나타 내는 단면도 및

[도 3] 동 실시예에 있어서의 건물 개구부의 창을 개방 하고, 스크린을 설치한 상태를 나타내는 수평 단면도



임(10)의 수납 프레임(11)에 대한 스크린(15)의 전체 수납 상태에 있어서, 그 수납 프레임(11)의 전면에 있어서의 개구 측의 절반 이상을 덮도록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17] 상술한 바와 같이, 스크린 프레임(10)을 유닛화하여 이를 새시 프레임(1)의 내측에 장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스크린(15)의 수납 프레임(11)이 내부에 스크린(15)의 수납 공간을 갖기 때문에 수용 프레임(12)에 비해 가로 폭이 커지고, 게다가 스크린(15)을 그수납 프레임(11)에 수납했을 때는 그 수납 프레임(11)에 가동 문틀(16)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들을 합한 가로 폭이 더욱 커지게 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가동 문틀(16)의 종형재(24)를, 수납 프레임(11)에서의 수용 프레임(12) 측에 맞닿는 본체부(25)와, 그 본체부(24)

로부터 그 수납 프레임(11)의 전면 측으로 연장되는 조작부(26)를 일체로 구비한 것으로서 구성하고, 상기 조작부(26)가 수납 프레임(11)의 전면의 절반 이상을 덮도록 형성하면, 수납 프레임(11) 측에 가동 문틀(16)이 있어도 그들의 가로 폭이 그다지 커지는 일은 없고, 게다가, 상기 조작부(26)에 어느 정도의 폭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 문틀(16)의 개폐 조작을 위한 손가락걸이용 요철(26a)을 형성하는 영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스크린 프레임(10)에 가동 문틀(16)이 겹친 상태에서의 가로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스크린 (15)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스크린 프레임(10)을 새시 프레임(1)에 의해형성되어 있는 시야를 가급적 차단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0018] 상기 수용 프레임(12)에 형성되어 가동 문틀(16)의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에 계탈하는 래치(28)는 도 8에 상세하게 나타낸 바와 같이, 그 수용 프레임(12) 내에서 그전면 측으로 출몰 가능하게 가이드되고, 그 수용 프레임(12) 내에 수용된 스프링(29)에 의해 전면 측으로 돌출되도록 가압된 가압자(28a)를 구비하며, 그 가압자(28a)의 내단 측에계합 갈고리(28b)가 돌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가압자(28a)의 비가압 상태에서 그 계합 갈고리(28b)가 상기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에 계합하고, 그 가압자(28a)의 가압에의해 상기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와의 계합이 해제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가동 문틀(16)의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에 계합 갈고리(28b)를 계합시킨 상태에서 가압자(28a)를 가압하면,상기 계합 갈고리(28b)가 래치용 계합 가장자리(25a)로부터 벗어나,스크린(15)이 권취 방향으로 스프링 가압된 권취 축(18)에 권취된다.

[0019] 스크린 프레임(10)을 유닛화하여 이를 새시 프레임(1)의 실내측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스크린 프레임(10)을, 새시 프레임(1)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시야를 가급적 차단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성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가동 문틀(16)을 수납 프레임(11)에서의 수용 프레임(12) 측에 맞닿는 본체부(25)와, 그 본체부(25)로부터 그 수납프레임(11)의 전면측으로 연장되는 조작부(26)를 구비한 것으로 함으로써, 수납 프레임(11)에 가동 문틀(16)을 겹친 상태에서의 이들의 가로 폭을 비교적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스크린 프레임(10)에서의 상부 및 좌우의 안치수를, 적어도 새시 프레임(1)에 있어서의 각각의 안치수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큰 것으로서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스크린 프레임(10)을 설치하는 것에 의해 실내 공간의 쾌적함을 해치지 않는다.

끝.